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-853호

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(석관1의2구역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33번지 외 70필지
- 면 적 : 6,661m²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
 - 준공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-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조합명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병록)

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3가길 37, 1층

5.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

- 붙임 참조

6. 행위제한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의3(행위제한 등)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시행

붙임 지형도면 1부.